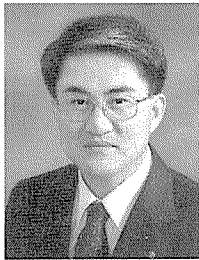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방안



서 천 석  
변리사·변호사(미국)

영업비밀의 사용에 의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가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잠재적 가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상당한 기간의 노력과 비용의 투자에 의해 획득된 정보라면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비록 실패한 연구개발 중 획득한 데이터 자료라 할지라도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 1. 머리말

최근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의 유출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첨단 산업분야의 최신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어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야기하는 등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제도적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각 기업별 대처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영업비밀의 개념과 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보호법의 개정내용 및 유출 사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구체적인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비공지성, (ii)독립된 경제적 가치성, (iii)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 (iv)기술상·경영상의 정보.

### (1) 비공지성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상태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비록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공개되어 공지된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

### (2)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

영업비밀의 사용에 의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가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잠재적 가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상당한 기간의 노력과 비용의 투자에 의해 획득된 정보라면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비록 실패한 연구개발 중 획득한 데이터 자료라 할지라도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 (3) 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유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통상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① 당해 정보에 비밀표시를 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경우

② 당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접근자에게 그 정보를 사용·공개할 수 없다

는 취지의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③ 당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공간적·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

#### (4) 기술상·경영상의 정보

종래 기술정보만이 영업비밀에 해당되었으나,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기술정보만이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생성, 특화된 모든 기술과 경영상의 노하우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 3. 침해행위의 유형

침해행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영업비밀을 기망,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행위 또는 부정취득 사실을 알고 이를 사용, 공개하는 행위이고 둘째, 계약관계 등에 의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이다.

### 4.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

(주요 개정사항)

항 목	종 전	개 정
보호범위 확대	기술정보만이 해당	경영상 정보도 포함
처벌대상 확대	기업의 임·직원에 제한(신분법)	모든 위반자
	개인만 처벌	법인처벌규정(양벌규정) 신설
처벌행위 확대	기수범만 처벌	미수·예비·음모죄 신설
부당이득 환수제도 도입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부당이득액의 2~10배의 벌금 부과
친고죄 여부	친고죄	비친고죄

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범위의 확대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 5. 영업비밀 주요 유출 사례

#### (1) 국내 정보 해외 유출 사례

국내정보의 해외 유출 사례로는 1998년 삼성전자의 64메가 D램 메모리 반도체 핵심기술의 대만 유출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 분야에서 선도적 기술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1조원 이상의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추산된다.

2003년 6월 현대 LCD 직원이 경쟁사인 중국 트롤리사 한국지사인 비전 테크사에서 전직을 약속받고 컬러 STN LCD 핵심제조기술·영업자료를 CD에 담아 유출하려다 적발된 경우가 있었다. 또한 2003년 11월에는 국내 최고 기술기업 가운데 하나인 삼성SDI 직원이 승진누락에 불만을 품고 대만 CPT사에 PDP 핵심기술을 빼내다가 구속되는 등 최근에도 첨단 기술의 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 (2) 국내업체간 기술 유출 사례

2003년 10월 (주)SKT의 자회사인 SKTT사 윤모 상무는 자기 회사를 설립한 후 중국 수출 휴대폰 탑재용 S/W 및 부품을 빼돌려 활용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2003년 11월에는 원격 화상 솔루션 개발회사인 (주)텔리전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조모씨 등이 경쟁회사인 (주)포부를 설립한 후, (주)텔리전의 개발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등 국내 업체간의 기술 유출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 6. 영업비밀 보호방안

#### (1) 사전적 보호방안

가.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채용 및 퇴직시 서약서 수령

취업규칙에 영업비밀 유지의무 부과 조항 및 퇴직시 일정기간 경쟁업체에 전업 금지조항을 두고 신규채용시 이를 상세히 고지하여 고용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채용 및 퇴직시 상기 의무를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것은 매우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영업비밀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만일의 분쟁 발생시 유력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의미도 있다.

다만, 전직 제한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6개월~1년)여야 하며, 지나치게 긴 기간의 제한은 반사회질서(민법 103조 참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나. 영업비밀관리규정의 제정

영업비밀의 등급과 중요도를 분류하는 방법, 각 등급에 따른 보존연한의 설정, 등급에 따른 비밀취급자와 책임자 지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한다.

#### 다. 전산 및 통신상의 관리 강화

컴퓨터 파일의 경우 한번의 복제나 전송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유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실제 사례에서도 파일 형태로 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에서는 특히 각 취급자별 정보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통신(텔레텍스, 팩시밀리, 전화 등)을 이용하여 중요한 영업비밀 정보가 교신될 때에는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기술인력 우대**

IMF 사태이후 평생직장 개념의 붕괴에 따른 고용 불안감의 팽배와 기술 인력에 대한 상대적 홀대가 최근 영업비밀 유출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술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 투자 및 기술 계약 교섭시 기술제공·시설방문 제한**

최근 기술협력, 외국 공동 진출, 투자 제의를 가장한 국내 정보 유출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2001년에는 국내 배터리 업체인 S사에 대해 대만 벤처 캐피탈 회사가 투자 의향을 밝히자 마침 자금난을 겪고 있던 S사는 가지고 있던 모든 기술을 제공하였으나, 그 후 투자 유치는 실패로 돌아가고 6개월 뒤 대만에서 만든 유사 제품이 일본에서 판매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유출을 방지하려면 기술 계약이나 투자 상담시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며, 공장이나 시설 방문도 가급적 제한하고 허용하더라도 핵심 영역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구한 후 제한된 지역만을 보여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 특허 등록 여부의 검토**

특허로 등록하게 되면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대신, 출원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는 기술을 공개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까다로운 특허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고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으나, 유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와 제3자가 동일내용을 특허로 등록시에는 그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아예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 영업비밀의 형태로 고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전략-일명 '블랙박스'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특허 요건을 갖춘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특허권으로서 보호받을 것인지, 아니면 영업비밀로서 관리할 것인지 하는 것은 당해 기술의 종류와 수명, 업계의 수요, 경합기술의 유무, 침해행위의 발견 용이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전제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 특허와 관련된 정보도 영업비밀로 보호 필요**

특허 등록한 기술이라도 이와 연관돼 파생된 각종의 상세 설계서, 공정 계산 관련 기술, 생산 등의 제조비법, 매뉴얼 등의 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영업비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특허와 연관된 파생기술이 추가 공개되면 경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개량 기술이 다른 특허로 출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후적 보호수단**

일단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구제수단으로 손해 배상과 침해행위의 배제 및 영업비밀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 구제수단으로 고발조치를 통하여 처

벌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7. 맺음말**

정보화가 고도로 진행됨에 따라 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업에 있어서 기술상·영업상의 정보는 제품의 생산·판매에 못지않게 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의식의 미비와 영업비밀의 범위에 대한 오해, 체계적 관리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해외로 기밀이 유출되어 결과적으로 심각한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내 중소·벤처기업에게는 큰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공정한 재판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소송비용의 절감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최근 국내 일부 대기업이 ITC 특허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한 뉴스는 중소·벤처기업에게 희망을 주는 낭보라 하겠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불가피하게 ITC 분쟁에 연루된 경우, ITC 절차가 갖는 이러한 양면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저렴하고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

